

시행일:2019.02.21. 입력자:장다겸 확인자:원대회

객원교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객원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(개정 2019.02.21.)

1.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
2. 국내의 다른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3.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간부로 대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4. 담당할 교과목의 전문가로서 본 대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(개정 2017.12.20.)
5. 예체능계열에서 전공 관련 협회 가입 회원 또는 전문분야 2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갖추고 본 대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(신설 2019.02.21.)

제3조(임용절차) ①객원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 (개정 2015.06.16)

1. 각 대학(원)장 추천(신설 2015.06.16.)
2. 총장의 제청(신설 2015.06.16.)
3. 이사장이 임용(신설 2015.06.16.)

②객원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통

3-2-12~2 제3편 행 정

2. 이력서 1통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4. 경력증명서 1통
5. 주민등록등본 1통
6. 교원인사기록카드

제4조(임무) 객원교수는 임용계약에 따른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대우) 객원교수의 대우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 학년도 초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유급, 무급 포함)

부 칙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객원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